

제410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5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0)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1)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5)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1)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0)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0)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6)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0)	2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	2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1)	2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5)	2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1)	2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0)	3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0)	3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6)	3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정기국회 제11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부산 서·동구 출신 안병길입니다.

마지막에 늦게 정개특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도 매우 높고 또 시간도 없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해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남인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감사합니다.

발의)(의안번호 211397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0)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0)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1)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5)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의안번호 2124571)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180)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50)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26)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5분)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22항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인순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이따가, 법안 처리가 오늘 빨리 되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하신다고 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먼저 김영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이해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만 이용하도록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위법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하여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경우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아까 셋째 부분에서 가중처벌 부분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하……

○소위원장 김영배 예, 뒤의 것이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거기 7년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순·김영배·이해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송옥주·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추천보조금의 보조금 지급 구간 중 현행 여성 추천 비율 30% 이상 구간을 40% 이상 구간과 30% 이상 40% 미만 구간으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하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법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2소위에서 통과된 여성정치발전 비용과 관련된 기금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취지가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11월 21일 제2소위 합의안의 제28조 2항 제6호에 따르면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이 경비들의 비율 문제라든지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아무래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급여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취지를 달성하는 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비로서’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등에 관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런 수정의견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김영배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현행 단계에서 한 발짝 더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했고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다음번 심사에서 또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저희가 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는 김에,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조금 더 명확성을 주는 게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는 거니까 위원회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김상훈 위원 그것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늘 결국 이 안건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소위 때 또 그런 의견도 나왔고 하니까, 다시 개정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남인순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통과된 법안 내용에서 조금 변화되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뭘 규칙으로 정하는가 규정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정할 수가 있지만 선관위 쪽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 법에다 명시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을, 워딩을 조금 더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의 수정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안 그러면 인건비로 100% 쓰고 활동비를 0%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신 취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조율이 안 되면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정치발전비 대부분이 여성 당직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취지에서 개선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법률안에 제한적인 위임입법 범위가 명확히 표시되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개정입법 법률안의 취지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그 부분에 개선점이 담기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만 넣는 거거든요, 김성원 위원님. 그것을 조금 추가하는 거니까, 인건비하고 활동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이것을 정해 줘야 규칙으로 할 수 있다……

○김상훈 위원 규칙으로 위임해서 그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위원장 남인순 아니요, 이것을 넣고 위임을 해 줘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취지는.

○김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김성원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법률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위임 범위가 특정돼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는 게 당연하고 또한 저희들 업무 입장에서도 그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시더라도 이 개정 입법의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 내용에 그것을 보장하는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원 위원 가능하잖아요. 잘못 이해를 하신 거지.

○위원장 남인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했던 원안대로…… 그러니까 취지는 분명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상 어느 한 부분이 100%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 내용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과 의사일정 제9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해 주신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하고 흠결 없는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심상정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고요, 배준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탄희 위원님……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최형두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5분 할까요?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남인순 의사진행발언을……

(「통상 3분 하지 않나요?」 하는 위원 있음)
3분?

○심상정 위원 5분 해 주세요.

○위원장 남인순 예, 5분으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5분이나 줘.

○위원장 남인순 3분인데 네 분이시니까……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우선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헌법 정신을, 헌재의 결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2소위에서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법과 함께 지금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정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당원이나 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서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 설치라든지 명함 나눠 준다든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 오늘 개정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소위에 회부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운동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당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곧 정당별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의 여러 방법을 불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로 뽑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지 국민의 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 취지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선거법 관련 개정은 이 위원회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들이 정해야 되지만 그동안 전통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확정 한 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뭐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민주당이 병립형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말씀입니까?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안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으며 공식 선거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다음 주 12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무려 7개월이나 넘어서, 한심한 상황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좀 많이 참조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위원 위성정당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간사 측에 ‘위성정당 금지법을 정개특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해야 된다’, 안건 채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거부하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결국은 지난 11월 21일 날 열린 정개특위 법안2소위에서 저희 2소위 소속 민주당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서면이고요. 해당 법 규정을 보면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상훈 소위원장님께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법 규정에 근거가 없는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다음 소위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정개특위 2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성정당 금지법이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정개특위 법안2소위는 7월 13일 이후로 네 달 동안이나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국회 정개특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누가 정말 이 위성정당 금지법 처리를 막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밑실 협의만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성정당 금지법은 지난 2022년 7월 22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작성한 정개특위 원구성에 관련된 합의문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으로 제일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위성정당 금지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이 법안 처리 절차가 신속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이 위성정당 금지법이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논의가 약간 앞뒤가 바뀌고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데, 우선 지난 1년 동안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공론조사도 벌였고 또 국회에서 100인 전원 위원회도 열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가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나왔지만 이상과 현실이 서로 상당히 충돌하는, 특히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비례대표 몇 석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보다는 의석을 늘릴 수 없다면 300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거제도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지금 소선거구로 그냥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전체 논의가 상당히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 지난 연초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또 이탄희 위원 같은 분들은 대선거구제 방식, 이렇게 해서 유럽형이라든가 많이 논의

를 해 왔는데…… 공론조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성, 소선거구제를 선호했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이후에 4당 체제를 탄생시켰던 그 제도, 수도권에 특히 소선거구제가 평민당 이래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 득표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10% 안팎 정도인데 의석수는 무려 6배가 차이는 이 문제점 때문에 대선거구든 아니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안이 되어야 큰 틀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 특히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큼니다. 국회 의석수를 늘리자니 특권을 늘린다는 비난에 직면해서 국회를 차라리 해산시켜 버리자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자니 당장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부터 의석수를 조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47석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보자면 어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비례성·대표성은 300석 의석 전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큰 틀의 논의가 국민 여론에 또 국민 저항에 또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부딪히면서 위축되어 왔고 결국 47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다가왔는데, 심상정 위원님께서서는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문제를 여러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걸 제도가 아니라 전략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해 놓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런 위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김진표 의장의 제안으로 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석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면적 대비를 반영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동서지역을 통합시키는 큰 권역별, 큰 정치인을 탄생시키는 동서화합형 이런 모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 내에서 너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지고지선인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면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실 우리 논의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사무총장님께도 한번 여쭙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예비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선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돈 선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치밀한 장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각 정당별로 경선을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경선을 빙자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작 각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이삼 %가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관위가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지금 바로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요?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님 의사 진행발언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김영배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난번 정개특위 2소위 때부터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어쨌든 정개특위가 출범해서 기본 모토는 정당 간 합의하에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해서 도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절차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워요. 산식도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이 나오는지. 그러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거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양당의 지도부와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협의할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선부론 주장은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본인이 투표했을 때 본인의 투표 행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이해하고 또 그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전체회의 때는 그간 합의된 안건만 처리한 거고 추가적으로도 소위에서 안건 협의를 해서 논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우선 국민들께 선거제도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번만큼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받들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100명의 의원들이 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거제도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당리당략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주당이 먼저 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민주당 당론이었던—가이드라인이지요—240 대 60 연동형 비례 그리고 만약에 240 대 60에서 비례가 60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부분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의 협상이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을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론조사를 국회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것도 최초로 처음으로 선거제도 관련해서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비례성을 상당히 높여 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열려 있는 모습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빨리 양당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논의가 우리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김상훈 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김영배 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일단 발언……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간사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직회부를 해 달라는 몇 분의 요청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오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상훈 간사님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연장은 내년 5월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이 더 긴장하고 정말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여섯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해서는 현재 2소위에 계류 중인데 심사를 좀 더 진행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심사가 잘 안 되니까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은 법안이 오는 대로 다 2소위로 직회부를 해서 2소위에 되어 있고 지금 하나 최근에 내신 법안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15일이 도과하지 않아서 아직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심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간사님 간에 얘기를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만 논의되기 어렵고 또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한 부분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논의하는 것이 좋은지를 간사님들 간에 빨리 협의하셔서…… 2소위에서 계속, 어차피 2소위가 선거제 논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소위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당 방지법과 또 다른 선거제 관련한 어떤 논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2소위에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2소위에서 논의를 할지 아니면 2소위에서 논의를 하기가 조금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든지 어쨌든 둘 중의 하나는 결론을 내 주셔야지, 법안을 내 주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저희는 심사를 할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회의 또는 2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만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운동과 관련해서 심상정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2소위의 안건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1소위.

○**위원장 남인순** 1소위예요?

○**김영배 위원** 공직선거법은 1소위에 계류되어 있고요, 한 번 심사를 했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치자금법은 행안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트라서 간사 간 협의가 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맞습니까?

○김상훈 위원 그 부분도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공선법은 2소위 소관이었지만 1소위가 다룰 안건의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몇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도록 해드린 거지요.

○김영배 위원 제가 1소위로 오기 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간사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법안을 어느 소위에서 심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연관된 법안의 정리는 아마 양당 지도부가 조율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비례대표 후보 경선운동과 관련한 심사 소위도 정해 주시고 심사 일정도 재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발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선거제와 관련한 논의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건 정도인 것 같아서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상 훈	김 성 원	김 영 배	남 인 순
맹 성 규	문 진 석	박 정 하	배 준 영
신 정 훈	심 상 정	안 병 길	이 원 택
이 탄 희	이 해 식	장 동 혁	최 형 두

○청가 위원(1인)

조 해 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박 태 형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입 법 심 의 관	김 승 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용 빈
법 제 국 장	김 범 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문정복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2023. 10. 25.
허 영	이해식		2023. 11. 28.
이만희	안병길	국민의힘	2023. 11. 17.

○의안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7. 11. 심상정·장혜영·강은미·류호정·이은주·배진교·강민정·양정숙·김종민·박용진 의원 발의)

8월 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용혜인·강성희·오영환·이탄희·류호정·윤미향·이성만·배진교·강은미·이은주 의원 발의)

8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이개호·권칠승·정성호·송재호·김홍걸·남인순·김철민·박정·신정훈·이원택·변재일·전용기·송기현·김원이·허종식·김성주·윤재갑·권인숙·소병철 의원 발의)

9월 27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6. 이탄희·윤영덕·강민정·이수진(비)·정필모·이소영·민형배·황운하·이원욱·이학영·김상희·김한규·이용우·양이원영 의원 발의)

11월 7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양금희·김기현·지성호·전주혜·강민국·이영·정운천·서정숙·윤창현·김상훈·용혜인·류성걸·윤한홍·정일영·류호정·남인순·조명희·장혜영·김승수·최승재·윤주경·최연숙·한무경·김예지·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주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김영배·이상현·김정호·김민철·김희재·이형석·이해식·윤재갑·홍성국·안규백·신정훈·오영환·정필모·정태호·장경태·양기대·황운하·임호선·이수진(비)·이원택·이용선·민형배·강병원·박재호·

인재근 · 전해숙 · 김승원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박범계 · 고용진 · 김경만 · 김민철 · 박영순 · 양정숙 · 이성만 · 이수진(비) · 장철민 · 조승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이해식 · 강준현 · 김종민 · 김철민 · 노웅래 · 서영교 · 양향자 · 이상직 · 이상현 · 이수진 · 진성준 · 한병도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은주 · 이채익 · 강은미 · 양정숙 · 심상정 · 김종민 · 김영배 · 배진교 · 류호정 · 이해식 · 서영교 · 장혜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송옥주 · 권인숙 · 김상희 · 김영주 · 남인순 · 류호정 · 안호영 · 양향자 · 우원식 · 윤미향 · 윤준병 · 이수진(비) · 인재근 · 정춘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이해식 · 김경협 · 김정호 · 윤영찬 · 서영교 · 이병훈 · 박정 · 고민정 · 천준호 · 신정훈 · 김진표 · 김남국 · 허영 · 김영배 · 홍기원 · 정필모 · 고용진 · 서삼석 · 홍익표 · 박홍근 · 황운하 · 임호선 · 김두관 · 전용기 · 윤준병 · 조오섭 · 전해숙 · 서영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정필모 · 민형배 · 이해식 · 윤재갑 · 송옥주 · 강준현 · 오영환 · 허영 · 이용빈 · 김성주 · 홍익표 · 황운하 · 이수진(비) · 전해숙 · 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 17. 민형배 · 홍정민 · 소병훈 · 윤미향 · 김영배 · 양이원영 · 주철현 · 김의겸 · 이수진(비) · 박성준 · 송재호 · 정필모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5. 11. 유상범 · 김기현 · 김미애 · 김형동 · 박형수 · 서병수 · 윤한홍 · 이채익 · 장제원 · 전주혜 · 정점식 · 정진석 · 조수진 · 주호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2. 6. 30. 권칠승 · 김상희 · 김승남 · 김희재 · 민병덕 · 박광온 · 소병훈 · 이장섭 · 임종성 · 임호선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이원욱 · 강득구 · 강훈식 · 김영주 ·

김철민 · 백혜련 · 설훈 · 오영환 · 윤후덕 ·

이정문 · 장철민 · 최혜영 · 홍정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남인순 · 권인숙 · 김상희 · 김영배 · 민형배 · 신정훈 · 심상정 · 양정숙 · 이탄희 · 인재근 · 정태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윤호중 · 강준현 · 강훈식 · 김영배 · 김영진 · 김종민 · 김홍걸 · 송갑석 · 윤재갑 · 이정문 · 이학영 · 이형석 · 장경태 · 한병도 · 한준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위성곤 · 김정호 · 김한규 · 박재호 · 송재호 · 신현영 · 오기형 · 유정주 · 윤준병 · 이용빈 · 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송석준 · 김상훈 · 정우택 · 유상범 · 이채익 · 박덕흠 · 이종배 · 서일준 · 성일중 · 김영식 · 김학용 · 하영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7. 5. 정희용 · 김희곤 · 윤창현 · 박덕흠 · 구자근 · 김상훈 · 박수영 · 양금희 · 이용 · 김성원 · 김영식 · 최영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남인순 · 심상정 · 전재수 · 신정훈 · 김영배 · 홍성국 · 김상희 · 맹성규 · 김두관 · 이탄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남인순 · 윤건영 · 권인숙 · 심상정 · 강훈식 · 전재수 · 신정훈 · 김영배 · 홍성국 · 허영 · 김상희 · 맹성규 · 김두관 · 진성준 · 이탄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김영배 · 이장섭 · 남인순 · 이해식 · 전재수 · 김철민 · 유정주 · 이은주 · 민형배 · 최기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지성호 · 김성원 · 이용 · 김희국 · 권명호 · 권성동 · 정우택 · 박대수 · 한무경 · 김승수 의원 발의)

이상 21건 11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8. 김상희 · 장철민 · 이탄희 · 이학영 · 황운하 · 이수진(비) · 민형배 · 이용빈 · 김종민 · 홍영표 · 강민정 · 유정주 · 윤영찬 · 우원식 ·

이용우 · 오영환 · 진선미 · 전해철 · 이용선 ·
김경만 · 홍기원 · 김두관 · 윤건영 · 김한규 ·
윤준병 · 전용기 · 기동민 · 허영 · 윤영덕 ·
조오섭 · 허종식 · 김성환 · 신정훈 · 이형석 ·
전재수 · 정필모 · 최인호 · 맹성규 · 김한정 ·
허숙정 · 김의겸 · 이정문 · 강준현 · 김민기 ·
이원택 · 조응천 · 문정복 · 이해식 · 권인숙 ·
강훈식 · 김영주 · 이수진 · 이상현 · 이소영 ·
이원욱 · 임호선 · 서동용 · 윤재갑 · 송재호 ·
고용진 · 송갑석 · 김수홍 · 이장섭 · 신영대 ·
인재근 · 유기홍 · 고영인 · 최혜영 · 민병덕 ·
박광온 · 김민철 · 김홍걸 · 양이원영 · 전해숙 ·
문진석 의원 발의)

11월 29일 회부됨